

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 348호로 2018년 2월 19일 고기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의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로의 진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7조).
- 나.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17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일자리로 창출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고 기 관 의원 대표발의】



2018. 3 . 5 .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 349호로 2018년 2월 19일 고기관 의원 외 5명  
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7.13.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  
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2017.7.13.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

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일자리센터의 구 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사업 추진·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청년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2. 청년의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

3.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실시

#### 4.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성화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 및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 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사업정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68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